

감리지적사례 FSS/2008-28 : 유형자산 주석 과소기재

- 쟁점 분야: 주석 미기재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 결정일: 2016년
- 회계결산일: '14.1.1.~'14.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년 5월 B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유형자산을 취득하였다. 회사는 X1년말 별도재무제표 주석 작성 시, 합병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1,288억원을 기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주석 중 유형자산의 총장부금액(원가법 적용시 취득 원가)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1,288억원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73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유형자산의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해 합병으로 취득한 일부 금액을 과소계상하였다. 회사는 유형자산 관련 오류를 수정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정정공시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감사인은 유형자산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과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 주석 검증 시에는 주석과 회사의 유형자산총괄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으나, 별도재무제표 주석금액은 유형자산총괄표와 적절히 비교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별도재무제표도 금융회사 등의 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한 자료임을 인식하고 유형자산 관련 주석이 적절히 공시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